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때 포함해야”...대법 첫 판단

“수습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공백 없이 근무한다면 계속 근로기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됐다면 수습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지방의 한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12월1일 수습사원으로 이 의료원에 입사한 A씨는 한달간 근무한 후 33만8000원을 받았고, 의료원은 2000년 1월1일 A씨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했다.

의료원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는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보수규정을 2020년 1월에 개정했다. 근로자 퇴직금 산정에는 단수제가 더 불리하다.

A씨는 2018년 3월 퇴직했다. 의료원은 A씨가 2020년 1월1일에 입사했다고 보고 단수제를 적용해 퇴직금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1999년 12월1일에 입사해 누진제 대상에 해당한다. 누진제에 따라 퇴직금 1억 3000여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미지급 퇴직금 5000여만원을 달라는 이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A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입사일(1999년 12월1일)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 계산의 시작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1심은 의료원이 1999년 12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33만8000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습생으로 의료원에 합격했고, 의료원이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 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도 1999년 12월에 1개월간 근무한 것은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습기간 임시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1999년 12월 A씨의 근무 형태가 수습사원이 아닌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년 12월 근무와 2000년 1월

부터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 사이에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기간(수습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사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대법은 A씨가 1999년 12월 한달간 근무한 것은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무를 제공한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

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1995년 7월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의 근무기간과 정규직사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법은 사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2015년 11월 판단하기도 했다. 사용계약 역시 그 자체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서선욱기자



택시조형물에 탄 관계자 4.2택시 희망버스 기획단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청운호차주주민센터 인근에서 '뒤뚱뚱뚱 4.2택시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 오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깡' 대대적 단속

작년보다 단속반 확대...추가 단속·수사 의뢰 추진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깡)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단위 단속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2019년부터 본격 발행됐다. 발행처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원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효용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6000억원

어치나 팔렸다.

그러나 부정유통 행위도 덩달아 늘면서 지난해에만 총 212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이 중 14곳은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곳은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반 규모를 확대한다. 단속반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편성한다.

단속 시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분

석하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지자체별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실효성도 높인다. 또 단속 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 또는 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단속 기간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도 실시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재현기자

‘통화녹취 1억 손해소’ 김건희 측 “소취하 협의 아직 없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 취하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날 기준으로 아직은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설명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 취하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상의나 법리검토를 거쳐 증액·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